

위험관리기법

〈전호에서 계속〉

(9) 재고수량이나 가격의 변동이 심한 저장품에 대한 보험계약 수시 입출고(入出庫)가 심한 창고 내의 상품이나 유류저장탱크내의 기름 등 재고수량 또는 가격의 변동이 심한 저장품에 대하여 보험료의 낭비를 피하면서도 이재시에는 실손보상을 얻을 수 있도록 한 계약의 형태로서 새고가액통지특별약관(在庫價額通知特別條款)이 있다. 특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가) 실손보상

이 보험계약에서는 보험가입금액이 언제나 새고가액과 함께 변동하므로 어떠한 경우에도 「양사는 항상 동액이다」하는 사고방식 즉 전부보험으로 계약성립이 되도록 되어있다.

(나) 보상한도액

이 보험계약에서는 일정한 보상한도액을 정해서 잠정적인 예치보험료를 납입하고 보험기간이 만료가 되면 그동안 보험가입자가 통보한 재고수량과 새고가액을 합산·평균해서 확정보험료를 산정한 후 보험료의 과부족은 환급하거나 추징하는 방식으로 정산을 해 주는 것이 특징이다.

2) 화재보험의 추가약관 및 특별약관

(1) 추가약관

화재보험계약에 있어서는 보통약관에 다음과 같은 추가약관을 첨부해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가 있음으로 유익한 필요가 있다.

(가) 선계약 추가약관

이 추가약관은 보험책임이 개시되기 전에 미리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첨부하는 것이다. 따라서 보험요율의 적용은 현실적인 보험기간이 개시되는 때의 요율을 사용한다는 사실이 명기된 문언(文言)을 첨부하고 있는 것이다. 즉 보험요율은 손해율에 따라 수시 변동하는 것이기 때문에 적용요율에 의한 분쟁을 예방하기 위한 업무처리 기준의 명확화에 목적을 두고 있는 조항이다.

(나) 위험품 추가약관

이 추가약관은 도매업자 등의 점포, 각종창고로 사용되는 건물 또는 저장용탱크, 사일로나 이들에 수용되는 동산, 약제물을 계약하는 경우에 각 동산의 위험급별에 따라 첨부한다.

① 첨부방법

--- 위험품이 아닌 보통품을 보험의 목적으로 할 때

이 경우 위험품(A·B·특급)을 같은 수용장소에 보험목적으로 혼장할 수 없도록 제한했기 때문에 위험품할증은 적용하지 않는다.

--- A급위험품을 보험의 목적으로 할 때

이 경우에는 A급위험품 할증을 적용하고 위험도가 더 높은 B급 및 특별위험품은 혼장할 수 없다.

--- B급위험품을 보험의 목적으로 할 때

이 경우에는 B급위험품 할증을 적용하고 위험도가 더 높은 특별위험

품은 혼장할 수 없다.

--- 특별위험품을 보험의 목적으로 할 때

이 경우에는 특별위험품 할증을 적용하는데, 이 위험품보다 더 높은 위험품이 없기 때문에 다른 동산과의 혼장에는 제한이 없다.

② 위험품 분류방법

동산에 대한 위험급별의 판정기준은 다음과 같으며 상세한 품목별 표시는 따로 정해 놓은 위험품 등급표를 사용하고 있다.

- 보통품

위험품이 아닌 보통품은 A급위험품보다 발화위험이 적은 것을 말한다.

- A급위험품

• 유류(광·동·식물성기름 및 정유류)로서 인화점이 65°C 이상인 것

• 유지(동물성) 및 왁스류, 광·동·식물성

• 화학약품으로서 인화점이 65°C 이상 100°C 미만인 것 또는 발열량 8,000칼로리 이상인 것

• 니트로기 1기를 가진 방향족(芳香族) 니트로화합물로서 인화점이 100°C 이상 200°C 미만인 것

• 연소하기 쉬운 것(예컨대 황린, 황화린, 마그네슘가루, 알루미늄가루 등)

• 가연물과 혼합하는 경우 밝화한 위험이 있는 것

• 화재위험도에 있어서 위 품목과 비슷하다고 인정되는 것

—B급위험품

• 유류(광물성기름 및 정유류)로서 인화점이 30°C 이상 65°C 미만인 것

• 인화성 용제로 쓰는 도료, 잉크류, 유제 및 그 밖의 유사품

• 화학약품으로서 인화점이 30°C 이상 65°C 미만인 것

• 니트로기 1기를 가진 방향족, 니트로화합물로서 인화점이 65°C 이상 100°C 미만인 것

• 강산화성인 것

• 극히 연소하기 쉬운 섬유류

• 자연발화를 일으키는 것

• 물과 반응하여 급격히 발열하는 것

• 화재위험도가 위 품목과 비슷하다고 인정되는 것

—특별위험품

• 광물성기름으로서 인화점이 30°C 미만인 것

• 인화성 용제를 쓰는 도료, 풀류 및 그 밖의 유사품

• 화학약품으로서 인화점이 30°C 미만인 것

• 니트로기 1기를 가진 방향족, 니트로화합물로서 인화점이 65°C 미만인 것 또는 니트로기 2기 이상인 것

• 심한 과산화성인 것

• 공기중에서 자연발화 하거나 또는 마찰과 충격 등으로 즉시 발화 폭발하는 것

• 가연성 가스

• 폭발성 화학약품, 폭발성 금속가

루 및 그 밖에 이들과 유사한 것

• 물과 급격히 반응하여 가연성 가스(수소, 아세틸렌 등)를 발생하거나 발화 폭발하는 것

• 화재위험도가 위 품목과 비슷하다고 인정되는 것

(다) 화기금지 추가약관

이 특별약관은 창고물건요율을 적용하는 창고, 보관용 옥외탱크, 사일로와 이들에 수용되는 동산을 보험의 목적으로 하는 계약에 첨부하는데 그 내용은 당해 보관용 건물안에서는 담배를 피거나(喫煙) 불을 키는 등(點燈) 일체의 화기를 쓰지 못하게 하고 있는 특약이다. 그러나 완전히 시설이 된 전등과 안전등은 예외적으로 쓸 수 있다. 또 공장물건의 부속창고요율을 적용하는 물건에도 첨부할 수 있다.

(라) 작업금지 추가약관

이 추가약관은 일반물건의 작업할 중 적용물건과 공장물건의 공장종별 요율을 적용하는 물건을 보험의 목적으로 할 경우에 보험회사에 통지된 작업보다 위험도가 높은 작업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마) 전기위험부담보 추가약관

이 추가약관은 전력을 사용하는 전기기기 또는 장치(발전소 및 변전소 포함)를 보험의 목적으로 하는 계약에 첨부하는 조항이다. 이러한 발전기, 전동기, 변압기 기타 전기기기·장치에 전기적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코일」의 변질 금속부분의 용해, 절연물질의 탄화 등의 손해가

생긴다. 이것들은 화재에 의한 손해라고 할 수 없으나 실제문제로서 보상 청구를 둘러싸고 분쟁이 생기기 쉽다. 그래서 이 조항에서는 전기적사고로 생긴 기기의 손해는 화재손해도 포함해서 일체 보상하지 않는다(다만 연소에 의한 다른 기기의 손해는 보상)고 정하고 있는 것이다. 각종 물건으로서 전력을 사용하는 전기기기 또는 장치에 대해 화재보험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모두 이 조항을 첨부하게 되어 있다. 그러나 전용주택 또는 병용주택의 가재에 포함해서 계약되는 가전용 전기제품의 경우에는 이 조항을 첨부하지 않는다. 따라서 전기사업을 하는 전기기기 자체의 전기적 사고를 담보받기 위해서는 별도 마련되어 있는 「전기위험담보 특별약관」을 첨부하여야 보상을 받게 된다.

(바) 냉동(냉장)위험부담보 추가약관

이 추가약관은 냉동(냉장)작업을 하는 공장이나 냉동(냉장)창고건물내의 냉동(냉장)물을 보험의 목적으로 하는 경우 첨부하는 조항으로서 화재에 의해 냉동(냉장)장치, 설비가 파괴되거나 변조(變調)가 일어나 온도변화가 생김으로써 냉동물이나 냉장물에 손해(부패등)가 발생할 경우 화재손해의 여부를 놓고 분쟁이 생기기 쉽다. 따라서 이와같은 간접손해는 보상하지 않는다는 것을 명확히 하고 있는 면책조항이다. 결국 이와같은 간접손해까지 보상받기 위해서는

「냉동(냉장)위험담보 특별약관」을 따로 첨부하고 할증보험료를 추가지급하여야만 보상이 된다.

(2) 특별약관

이들 특별약관은 화재보험보통약관이나 추가약관의 규정에 의해서 보상받지 못하는 위험을 특별히 담보받거나 할인받기 위해 첨부하고 있다.

(가) 석탄의 자연발화담보 특별약관

화재보험에서 자연발화 그 자체의 손해는 면책으로 하고 있으나 그 결과로 생긴 다른 보험의 목적에의 연소손해는 보상하고 있다. 따라서 일반적인 보관화물이 혼장(混藏)이 되어 있을 때 자연발화한 당해 보험의 목적만 보상받지 못하므로 별 문제가 없으나 다른 화물과는 혼장하지 않고 한군데 야적을 하는 사례가 많은 석탄의 경우 보통약관으로만 보험계약을 체결했을 경우에는 화재보험에 가입한 효과가 없게 된다. 특히 석탄이나 아탄(亞炭)의 경우에 열량이 8,000칼로리 이상이거나 보관방법에 따라서 자연발화를 일으키는 사례가 많다. 때문에 이러한 석탄을 보험의 목적으로 할 경우에 자연발화 위험을 보상받기 위해서는 이 특별약관을 첨부해서 인수하는 것이다.

(나) 타보험계약 특별약관

이 특별약관은 다른 보험계약을 체결할 경우에 그것을 보험회사에 통보한 후 승인을 받는 조항이다. 주 보통약관상의 계약전 알릴 의무나

계약후 알릴 의무 조항은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보험의 목적에 대하여 다른 계약을 체결하였거나 앞으로 할 경우 보험회사에 알리고 보험회사의 확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 특별약관은 그 확인의 서식 및 내용을 규정한 것이다.

또한 이 보험계약에 대한 다른 보험계약을 보험의 목적 자체의 위험 측정에는 관계없는 것으로 평소 소홀히 다루기 쉬우나 지급보험금의 계산과 초과보험으로 인한 도덕적 위험의 방지 등 보험경영상의 중요한 필요사항이므로 계약전 알릴 의무나 계약후 알릴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다) 소화설비할인 특별약관

이 특별약관은 소화설비의 할인이 적용되는 계약에 첨부하는 조항으로서 대상이 되는 소화설비는 다음과 같다.

- ① 초기소화설비
- 물통부 펌프소화기
- 산알카리 소화기
- 포말소화기

- 사염화 탄소 소화기
- 일염화 메탄 소화기
- 탄산가스 소화기
- 분말소화기
- ② 옥외소화전설비
- ③ 옥내소화전설비
- ④ 가반식동력소화펌프(소방자동차 포함)
- ⑤ 자동화재경보설비
- ⑥ 자동화재속보설비
- ⑦ 스프링클러설비
- ⑧ 이산화탄소 소화설비
- ⑨ 포소화설비
- ⑩ 할론1301 소화설비

(라) 공지할인 특별약관

이 특별약관은 연소·화대위험의 감소를 고려하여 보험료 할인을 해주는 조항이다. 즉 건물의 주위에 다음의 공지가 있는 경우에 건물 및 그 수용동산에 대하여 공지할인을 한다.

따라서 일반물건이 경우에는 보험료절감을 위해서 특히 유념을 해야할 특약조항이라 하겠다. ●

〈공지할인율 표〉

대면건물의 구조	1급·2급	3급·4급	1급·2급	3급·4급
공지거리	5~7m 미만	10~13m 미만	7m 이상	13m 이상
할인율	기본요율의 10%		기본요율의 20%	

〈다음호에 계속〉